

2024학년도 1학기 학부 수업운영 안내

※ 주요 학사일정은 ['학교 홈페이지>대학생활>학사정보>학부 학사일정'](#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1. 수업 운영 지침 : 대면수업 전면 실시

2. 성적평가 방식

상대평가	절대평가 (규정에 정해진 과목)	P/F (규정에 정해진 과목)
A 최대 50%까지, B~F 제한 없음	A~F 제한 없음	P or F

- 1)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난이도에 따라 성적이 부여되며, 부당한 등급상향 요구는 불승인 처리됨
- 2) 상대평가인 과목도 최종 상대평가 대상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절대평가로 적용됨
(개강 15주차 기준, 수강생 중 장애학생/ 학점교류생/대학원생은 절대평가 대상인원임)

3. 시험운영 방식

- 1) 과목별 시험 시행 여부와 방법은 강의계획서에서 확인
- 2) 추가시험 해당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시험 응시 가능
추가시험은 해당 시험 1주일 이내에 실시하며, 그 과목의 최종성적은 A-까지로 제한

4. 헤이영 출석부 이용 안내

- 1) 앱 사용 매뉴얼 : [학교 홈페이지 > 대학생활 > IT 서비스 > 스마트캠퍼스 > 헤이영캠퍼스](#) 숙명
가. 강의실 출결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반드시 핸드폰을 소지하고
입실하며, 핸드폰 분실 혹은 출석부에 출석이 누락된 경우 수업시간 내 담당교수에게 출석 확인
나. 과목별 출결에 관한 문의는 강의계획서에 공개된 교강사 이메일로 요청

다. 유고결석신청은 헤이영출석부에서 과목별로 신청

라. 생리공결 신청가능 대상일은 **개강일부터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말고사 직전일까지** 가능

(예) 규정상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 가능하므로 기말고사 직전일 6/7 생리결석을 한
경우 6/10 자정전까지 헤이영출석부에서 신청해야 이후 신청권리는 소멸됨

2) 수업형태별 출석인정기준

출결 방식	강의실(비콘)	스노우보드	
		화상강의(zoom)	강의영상(녹화영상)
출석반영시점	즉시	수업 진행 다음날부터 결과 확인 가능	매 주 월요일(한 주차 시작일)부터 이전 주차 출결 여부 결과 확인 가능

3) 유고결석 사유별 기준 **[강의형태가 대면인 경우에 한함]**

- 학칙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헤이영 출석부 앱에서 과목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요청하면 출석으로 인정(유고결석 처리)할 수 있습니다.

출석인정사유	구체적 기준	비고
1. 신병	①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(수업일수 기준 총 2주 이내 분량의 결석만 인정함 ex) 주 2회 수업의 경우 4회까지 승인, 주 1회 수업의 경우 2회까지 승인 가능) *진단서,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 제출 ②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(제1군~제4군 전염병/콜레라, 장티푸스, 간염, 일본뇌염, 수두, 홍역, 결핵, 독감 등) ※ 2024-1학기부터는 코로나19 감염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신병 기준 적용. 별도 예외 기준 적용하지 않음.	신청 및 승인 (헤이영 캠퍼스)
2. 직계가족사망	①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(휴일포함) ② 조부모 사망 시 3일(휴일포함) *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	
3. 교육실습	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	
4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	입사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용 서식에 내용 작성하여 학부(과)장, 학사팀 승인을 거쳐 최종 교강사에게 제출 * 신청조건 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,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의 정규/채용 전환형 인턴/1년 이상 계약직 취업자(세부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참조) * 서식: 홈페이지>대학생활>학사정보>문서양식함>출석인정신청서(조기취업생용)	교/강사에게 직접 제출
5. 그 밖의 공식 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대외활동 참석, 외부교육 수강 등의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)	공식행사 인정 범위 ① 학부(과)장,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②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일(공지사항 화면 캡처) ③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(공문확인) *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 관련 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·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	신청 및 승인 (헤이영 캠퍼스)
6. 생리 결석	①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② 주기별 1회/학기당 최대 4일 인정되며, 생리공결일을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해야 함	

※ 생리공결 관련 주요 변동예정사항(2024-2~)

: 다음 학기(2024-2학기)부터 생리공결 신청 기준이 “생리공결일 포함 4일 이내” → “생리공결일 포함 2일 이내”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
5. 주요 변동사항

- 이번 학기(2024-1학기)부터 기말수업평가 미참여 시 성적조회제한기간이 기존 3일에서 4일로 변경됩니다. 이 점 유념하시어 적극적인 수업평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기존	→	변경(2024-1학기~)
기말수업평가 미참여 시 성적확인기간 중 최초 3일간 성적 확인 불가		기말수업평가 미참여 시 성적확인기간 중 최초 4일간 성적 확인 불가